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현실과 향후 과제

박용남 지속기능도시연구센터 소장

••

1. 머리글

우리는 이 연약한 지구라는 행성이 더 이상 기후변화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할 수 없을까? 세계 전역에蔓延된 기아와 빈곤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은 정말 없을까? 악마의 얼굴을 한 돈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아이디어는 진정 없는 것일까? 치료비가 없다고 문전박대 당하지 않으면서도 소외계층에게 의료혜택을 돌아가게 할 수는 있을까? 영양실조로 허덕이거나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의의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없을까? 꿈 같기도 하고 허황된 말장난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해답을 이미 찾았거나,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난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이들을 우리는 통상 사회적기업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지금도 우리 사회 도처에서 세상을 바꾸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묵묵히 활동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런 사회적기업가들이 둉지를 틀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현실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해보자 한다. 그를 위해 우선 우리는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기준과 정의를 고찰해 보고, 국내·외의 사회적기업 사례를 환경, 먹거리, 의료, 음용수, 유기농 생산 등의 분

야에 한정해 몇 가지 소개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현실과 육성 정책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나마 진단해보고, 향후에 우리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그 과제를 거칠게나마 도출해보려고 한다.

2. 사회적기업의 기준과 정의

사회적기업은 국가 또는 특정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어 아직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정의나 기준은 없고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자주 소개되는 개념으로는 EMES(The Emergency of Social Enterprise in Europe)¹⁾가 소개한 정의가 있는데, 그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9가지 기준을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²⁾

[표 1] EMES가 제시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9가지 기준

경제적 기준 4가지	사회적 기준 5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은 전통적인 비영리조직과 달리 지속적으로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함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하며, 지원을 받더라도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운영 자율성을 가짐 • 공공기관과 달리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며, 조직의 재정 안정성은 구성원의 노력에 달려 있음 •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유급 근로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나 특정 집단을 위한 목표를 추구하므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함 • 공동의 이해나 목표를 추구하는 지역사회와 시민활동의 산물이므로 시민 주도의 참여적 특성을 어떤 형식으로든 보존 • 의사결정 권한이 자본 소유에 기초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1인 1표에 의함 •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익 분배 • 서비스 이용자들이 기업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침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OECD(1999)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을 공익을 위한 모험사업가적인 전략으로 조직화하여, 수익의 극대화가 아닌 경제적·사회적 목표

1) 1996년 유럽연합 15개국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사회경제연구 분야의 연구 네트워크임.

2) 정병순·신경희·차은수,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신경희,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사회적 소외와 실업문제에 대하여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량 있는 민간기업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사회적기업이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 하기보다는 사회적 요구의 충족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좀더 큰 가치를 두는 비즈니스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해준다.³⁾

최근에 국내에서도 발간된 「사회적기업 만들기」라는 책에서 무함마드 유누스는 사회적기업을 인간 본성의 하나인 이타심에 근거한 기업으로, 이 기업은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하고, 기업주가 얻는 것은 인류에 봉사한다는 즐거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기업을 지칭한다고 말했다.⁴⁾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국내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가 주로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에 맞추어져 있고,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해준 사회적기업이나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예비 사회적기업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정의) 1항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법적으로 규정된 실체는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않았지만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사업체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부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을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곳 가운데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지정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고 1~3항의 조직형태, 영

3) 지경배,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강원발전연구원, 정책브리프 제80호 2010. 9 참조.

4) 무함마드 유누스, 송준호 옮김, 「무함마드 유누스의 사회적 기업 만들기」, (안양: 도서출판 물푸레), 2011, p. 23.

업활동, 사회적 목적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이 취약계층 고용창출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공공근로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그리고 다시 사회적기업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정책 변화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채택된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협의의 정의를 따르고 있고, 융통성이 전혀 없이 고용노동부나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거나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지 않은 곳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에는 현행 사회적기업의 법적 정의를 넘어서 크게는 지구촌, 좁게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광의의 개념으로 다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사례

3.1 국내 사례⁵⁾

■ 대구YMCA 희망자전거제작소

2008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대구YMCA 희망자전거제작소 (<http://www.bikeart.co.kr/>)”는 대구YMCA 산하에 조직된 사업단으로서 대구광역시와 대구도시가스가 공동으로 기획·운영을 하는 아주 독특한 조직이다. 이 제작소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창조적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희망자전거를 생산·보급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자전거 재활용 사업을 통해 자원낭비를 막고, 아트바이크와 투어바이크사업 등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활성화에도 적지 않게 이바지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저가 재활용 자전거 생산·보급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형성
- Tour Bike 운행을 통한 친환경적인 거리관광(Street Tour) 인프라 구축

5)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 개요집 501, 2010과 관련 단체 및 업체와 조합의 홈페이지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음을 밝힌다.

- 맞춤형 자전거 주문 생산 및 판매
 - 예술자전거 제작(축제 퍼레이드, 자전거 광고사업)
 - 몸에 맞는 자전거 제작 및 보급사업(시각장애인용, 노약자용)
- 공공미술 활용
 - 자전거 보관대 제작(자전거 보관대+설치미술)
 - 정크아트(자전거 부품을 활용한 설치 작품 제작 및 판매)
- Bike Theater 운영 – 자전거 예술 공연팀 운영

■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친환경급식지원센터

2008년 2월 설립한 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회적기업 인증 2010년 12월)는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을 지원하고 농식품 생산자와 시민 사이의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지역식량체계를 구축하여 도농상생에 기초한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센터는 농업회사법인 (유)원주생명농업, 원주가농영농조합법인,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현계산영농조합법인 등의 연계기업과 원주시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운영하는데,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 원주푸드 정책제안
 - 원주푸드 지원조례에 따른 원주푸드 종합계획 및 종합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정책제안 및 실천사업 추진
- 친환경 급식지원
 - 원주지역 친환경쌀 공동브랜드 '해울미'를 공공급식(2010년 기준, 초등 22개, 중학교 7개, 어린이집 45개)에 공급
- 결식아동 반찬 서비스
 - 원주지역 약 700명의 결식아동들에게 친환경 로컬푸드를 이용해 반찬 조리
- 배송함
 - SK행복나눔재단의 후원으로 2009년 행복도시락센터를 설립 · 운영(HACCP기준에 준하는 조리/포장 시설을 갖춤)
- 로컬푸드 식당 운영
 - 원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한 식당운영 및 도시락사업,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의 사회적기업, 원주YMCA고등학교의 위탁급식 담당

■ (주)이장

생태가치를 실현하는 (주)이장(www.e-jang.net)은 2001년 8월에 설립했고, 2007년 12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1세대 사회적기업이다. 경기도 안성에 소재하고 있는 이 회사는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생태마을 조성과 같은 사업을 주로 추진한다.

• 컨설팅 사업

- 지역활성화 교육 : 생태적이고 풀뿌리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공무원 · 지역주민 교육 지원, 현장중심의 그룹 작업, 워크숍 중심의 교육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 마련
- 생태농장 컨설팅 : 기존의 농장을 개조하거나 귀농, 귀촌을 위해 농장을 설립하는 경우 퍼머컬처를 활용하여 보다 생태적이고 자립적인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시설 및 건축계획 제공
- 생태마을 컨설팅 : 친환경농업과 도농교류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공동체 육성을 통해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마을사업계획과 운영계획 제공
- 지역활성화 컨설팅 :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 시설물계획 지원
- 지역사회관광 컨설팅 : 지역 안의 다양한 물적 · 인적 자원을 네트워크화하여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책임관광 · 윤리 관광 개발 지원
-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지원 :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의 지역협력단 운영지원
- 주민운동 지원 :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주민운동 지원, 지산지소운동, 생협운동, 지역화폐운동과 같은 일종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 푸른새미⁶⁾사업

-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환경친화적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태마을 조성
- 공간계획, 수자원관리, 에너지 관리, 경관관리의 친환경적 조성 및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주거환경을 최적화할 뿐 아니라 입주자들 간의 공동체 문화 함양을 위한 관리계획 지원

6) “새미”는 ‘마을’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푸른새미”는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생태적이고 공동체적인 마을을 의미한다.

■ 대전 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나눔과 협동을 모토로 2002년 8월에 설립한 민들레의료생협은 2007년 12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다. 우리나라의 지역화폐운동을 대표하는 한밭레츠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이 조합은 현재 내과, 치과, 한의원이 진료를 하고 있고, 건강검진센터, 노인복지센터와 심리상담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보건예방사업, 취약계층의료지원사업, 주민조직사업(예, 호숫가품앗이사업단) 등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환자 권리장전을 실천하는 의료기관

- 조합원 자신과 지역주민 모두의 생명을 아끼고 보살피며 다함께 힘 모아 의료 민주주의 실천

- 조합원 가족주치의 사업

- 조합원과 그 가족들의 건강·의료문제를 건강검진과 건강력 기초조사를 통해 부담 없이 상담 또는 조언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건강관리와 예방사업의 토대 마련

- 의료 소외계층 지원

-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원칙에 따라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외국인노동자 등의 의료 소외계층을 돋는 활동 추진

- 조합원 모둠활동

- 건강소모임, 지역소모임, 취미소모임 등 다양한 건강실천 주민공동체 활동 전개

- 조합원 건강교육

- 건강증진 활동가 양성교육, 건강강좌 등 시행

- 협력의료기관

- 환자 권리장전을 준수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건강마을 만들기를 전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협력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

- 협동경제 구축

- 나눔과 보살핌, 그리고 협동을 실천하는 지역화폐운동을 시행하는 한밭레츠 등과 함께 건강마을 만들기에 적극 동참함

3.2 외국 사례

■ 파비오 호사가 설립한 ‘모든 이에게 햇볕을(The Sun Shines for All)’

‘모든 이에게 햇볕을’ 이란 뜻을 가진 ‘선샤인즈포올’ 이란 기업은 사회적기업가인 파비오 호사(Fabio Rosa)⁷⁾가 설립한 회사로 브라질의 시골 사람들에게 태양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호사는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브라질 최남단의 히우그랑데두술(Rio Grande do Sul) 주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조사했다.

그는 거의 70퍼센트의 가정이 등유, 양초, 전지, 액화석유가스와 같은 에너지원에 매달 적어도 11달러를 들이고 있음을 알았다. 이는 전선, 전등, 플러그 및 콘센트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가정용 태양전기시스템을 임대해 쓸 수 있는 금액이다. 게다가 이 태양전기 시스템은 환경면이나 건강면에서 또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더욱 좋다.

호사의 회사, ‘선샤인즈포올’은 현재 브라질 남부의 전체 마을에 이 같은 태양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그는 현재 전기를 쓰지 못하는 100만 가정 가운데 4분의 3을 넘는 가정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⁸⁾ 호사는 ‘선샤인즈포올’ 이외에도 빙곤총 7000여 가구의 수입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키론(Quiron)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비영리사업을 구상해 실천에 옮기고 있기도 하다.

■ 그라민 그룹의 사회적기업들

벵골어로 마을을 뜻하는 ‘그라민 은행’은 세계적인 사회적기업가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무함마드 유누스가 창립한 은행이다. 이 은행은 최근 몇 년 동안 소액신용금융 모델 자체가 딜레마에 빠진 데다 설립자인 유누스가 방글라데시에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지구촌에 커다란 파란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아직 여전히 사회적기업

7) 파비오 호사(번역서에는 영어식으로 ‘로사’로 표현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브라질어로 표기함)는 2001년 스위스 제네바 소재 슬밥 사회적기업재단이 선정하는 ‘사회적 기업가 40인’의 첫 수상자 명단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같은 해에 세너제이 기술박물관이 인류에 증진에 기여한 기술자에게 수여하는 기술혁신박물관상을 받기도 했다. 이 상은 약 50개 국가에서 등록한 400여명의 후보자 가운데 5명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호사의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데이비드 본스타인, 박금자·나경수·박연진 옮김, ‘달라지는 세계: 사회적 기업가들과 새로운 시상의 힘’, (서울: 지식공작소), 2008, pp. 37~66을 참조하라.

8) 무함마드 유누스, 앞의 책, 2011, pp. 49~50. 이 책에서 유누스는 아주 논쟁이 될만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선샤인즈포올’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호사의 사업계획이 이윤을 추구하는 외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필요한 내부수익률(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유누스가 창립한 은행의 최근 이자율이 26~31퍼센트이기 때문에 그라민은행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 없게 된다.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생략한다.

의 얼굴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⁹⁾

그라민 은행을 모기업으로 해 탄생한 사회적기업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그라민 샥티(Grameen Shakti)’를 들 수 있다.¹⁰⁾ 2007년 ‘대안 노벨상’이라 불리는 ‘바른 생활상’을 수상한 디팔 바루아(Dipal Barua)가 대표로 있는 ‘그라민 샥티(에너지)’는 방글라데시에서 새롭게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라민 샥티의 독창적인 대출 제도¹¹⁾와 연계해 방글라데시의 농촌 마을에 매달 1만 4,000개의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고, 2010년 말 현재 총 50만 개의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다. 또한 50만 개의 개량된 조리용 난로와 5만 개의 바이오가스플랜트를 가동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¹²⁾ 이렇게 ‘그라민 샥티’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보급하면서 방글라데시의 농촌 마을에 재생 에너지 이용을 확산시킴과 동시에 농촌의 빈곤 퇴치와 고용 창출, 생활수준 향상 등을 적극 도모하였다.

이 밖에도 그라민 그룹 산하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그라민 다농(Grameen Danone)은 어린이들을 위해 맛있는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 요구르트는 방글라데시 아이들이 일상 식사에서 빠져 있는 철분, 아연, 요오드 등의 모든 미량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건강 회복에 크게 이바지한다. 프랑스의 다국적기업 다농과 합작해 만든 그라민 다농은 자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투자원금의 회수를 넘어서는 어떤 배당금도 기업주가 받지 않는다는 사회적기업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프랑스의 합작회사 베올리아(Veolia)와 합작하여 세운 사회적기업, 그라민베올리아워터사는 비소 오염이 큰 문제였던 방글라데시의 마을에서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만들었다. 그리고 인텔사(intel Corporation)와의 합작회사인 그라민인텔은 정보와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가난한 시골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했다. 예를 들면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하고 의료진료소도 드문 낙후지역들의 마을에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외에 그라민 그룹 안에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면

9) 박용남, 「꾸리찌바 에필로그: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지구를 살리는 창조적 도시혁명」, (파주: 서해문집, 2011), pp. 221-237.

10) 게세코 폰 뤼프케·페터 애틀렌비안 역, 김시형 옮김, 희망을 찾는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대안 노벨상 수상자들 이야기(서울: 갈라파고스, 2011), pp. 253-267.

11) 그라민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아주 소액의 할부금을 일주일 단위로 갚는 반면에 그라민 샥티는 월 단위로 할부금을 받는다. 그 수준은 한 달 등유비를 절약해 할부금을 납부하는 정도다.

12) 무함마드 유누스, 앞의 책, p. 61.

서 사회적 공헌을 하기 위해 그라민 은행과 합작해 만든 사회적기업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 좋은 예로는 모기장을 생산·보급하면서 말라리아 퇴치에 앞장서는 바스프그라민 합작회사, 극빈층 사람들도 저렴한 가격을 신발을 사서 신을 수 있도록 설립한 그라민아디다스, 편모와 장애인을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고용하는 데 중점을 둘 의류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오토그라민 등이 있다.¹³⁾

■ 지속가능한 모범 기업 그룹, 세켐(SEKEM)

이집트의 저명한 사회적기업가 이브라힘 아볼레시(Ibrahim Abouleish)가 경영하는 그룹 ‘세켐(www.sekem.com)’은 매년 다보스 경제 포럼을 주최하여 세계화의 견인차라 불리는 슈바프 재단이 지속 가능한 모범 기업으로 선정했고, 2003년에는 ‘대안 노벨상’을 수여하는 바른생활재단이 ‘세켐’의 프로젝트가 경제적 성공과 환경 존중,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경영 원칙이 잘 조화됐다는 점을 들어 아볼레시에게 ‘바른 생활상’을 수여하였다.

세켐 그룹의 활동은 카이로에서 북쪽으로 60킬로미터 떨어진 외딴 사막 한가운데서 생물역학 농법을 사용하는 세켐 농장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볼레시는 처음 곡물을 경작했지만 얼마 뒤 약용식물, 면화 등으로 작목을 넓혀갔다. 1994년 세켐이 개발한 유기농 면화 재배법은 이집트의 주요 특산물인 면화 생산에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그때까지 수백만 톤에 달하는 실충제가 살포되는 바람에 환경 파괴를 심각하게 앓았던 이집트는, 이 일을 계기로 농약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 현재 세켐은 유기농 벼을거리, 약초, 천연약품, 천연화장품뿐 아니라 면섬유와 유기농 의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생산물량 가운데 적어도 50퍼센트 이상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2차적으로 가능한 선에서만 수출물량을 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공학에서 자연과학, 예술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분야의 전공학과를 개설한 ‘헬리오폴리스대학교(Heliopolis University)를 2009년에 이집트 정부의 인가를 받아 개설하기까지 했다.¹⁴⁾

13) 위의 책, pp. 25–34.

14) 게세코 폰 뤼프케·페터 에를렌비인 엮음, 앞의 책, pp. 195–215.

4. 사회적기업의 현실과 육성 정책의 문제점¹⁵⁾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가치 추구와 영리활동을 통한 수익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열풍이 지나치게 과열된 상태이다. 그로 인해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차원을 넘어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사회적 기업 지원 열기가 뜨겁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는 있지만 수익구조나 법률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사회적기업들을 지원, 육성한다. 향후 요건을 충족시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적이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년 2월 새로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올 한해 총 112 억 원을 투자하여 320개의 청년 사회적기업 팀, 1,600명의 사회적기업가들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서울시는 전년도(309개 지정)에 이어 올해에도 300여 개의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신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12년 까지 그 수를 1,000개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2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전의 경우도 올해 총 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사회적기업인 (주)아이 엠 궁,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인쇄·디자인 기업인 (주)하이브 등 13개 대전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선정했고, 하반기에도 20개의 사회적기업을 추가 선발·지원해 대전을 사회적기업 육성 1번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계획까지 모두 합할 경우, 올 해만 줄잡아 최소 1,000개가 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사회적기업은 501개, 여기에다 아직 인증 절차를 밟지 않은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합한다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1,500개가 넘는 사회적기업이 존재하고 있고, 앞서 언급한 추세까지 감안한다면 그 숫자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15)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연구하는 활동과 현장 취재를 주로 해온 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작성 했음을 밝혀둔다. 박송이, “정부의 ‘지속불가능한 사회적 기업’ 정책,” 주간경향, 927호, 2011. 5. 31; 문진수, “서울형 사회적 기업 1000개 전시행정 표본,” 오마이뉴스, 2010. 6. 19; 문진수, “사회적기업 육성, 숫자 늘리기 게임이 아니다,” 오마이뉴스, 2011. 5. 5.

이렇게 숫자 늘리기 식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목을 매는 정부와 일부 자치단체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필자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현장 활동가와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희망제작소의 문진수 소기업발전소 소장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우리 모두 귀담아 들을만하다.

“아직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어린 묘목들에게 화학비료와 성장촉진제를 과도하게 뿌려대고 있다. 나무가 잘 성장하려면 먼저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법. 아무리 많은 나무를 심는다 해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땅이 죽어버리면 지금 몇 개의 묘목을 심었는가는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게임이 아니라 일정한 규모 안에서 개별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숫자 늘리기 식 사회적기업 육성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기업이나 재단의 행·재정 지원보다는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재정·경영·인력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재원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정부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될 경우를 예로 들면, 사회적 기업은 서울시로부터 최장 2년간 재정·경영·인력분야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즉, 기업당 평균 10명의 직원에 대해 1인당 93만원 가량의 임금을 지원받고, 기업이 채용한 전문가 1인에 대해서는 직원 임금과는 별도로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1대 1 그룹 컨설팅도 무료로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정적으로 인건비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사회적기업 생태계에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까?

말할 필요도 없이 사회적기업 생태계에는 눈먼 돈을 찾는 ‘짝퉁’ 사회적기업들이 도처에서 등장하고 그 숫자도 늘어나게 된다. 이는 곁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외피를 띠고 있으나 안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진정성이 결여된 기업과 단체들이 정부 지원을 얻기 위한 한 통로로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를 악용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한다. 많은 사회적기업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인증을 받았거나 현재 받기 위해 준비 중인 사회적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런 범주에 속한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인증과 지원만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시키면서 파생된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명시된 사회적기업의

정의에 나와 있는 ‘사회적 목적’의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다보니 아주 웃지 못할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좋은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데일리NK와 사단법인 ‘열린북한’과 같은 일부 서울형 사회적기업들처럼 이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기준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세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국제적 기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법 제정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로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에게만 인증을 한정함으로써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업적 수익 여부를 인증의 기준으로 삼는 정부의 획일적 정책과 법적 강제성이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해치고 있음을 말할 나위가 없다. ‘인증이 곧 지원’인 현실에서 본래의 착한 목적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억지로 인증조건을 맞추는 왜곡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인증 절차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전문적인 기관이나 브로커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사회적기업으로 대체하면서 국가의 책임이 방기될 위험이 매우 크고, 시민사회단체 또한 그동안 고유의 활동 영역으로 인식해왔던 것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정체성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사회적기업 개요집 501』에 제시된 전국의 사회적기업 목록을 보면 재가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인력운행, 보육서비스, 방과후 학교 등이 유달리 많고, 심지어는 환경운동과 내셔널 트러스트와 같은 국민선택운동을 하는 기관과 단체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이런 사정은 광역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지원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목록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선의로 시작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최근들어 심한 비판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적인 시각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책을 평가하고자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현재의 흐름을 두고 “국가의 책임이나 공공영역으로 가야할 부분, 복지영역에서 품고 가야 할 부분을 시장으로 밀어내려는 정책적 합의가 깔려 있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또 이런 사회적기업들의 대다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중단되거나 2~3년의 지원 기간

이 경과하고 난 후 시장에 나가게 되면 경쟁력이 없어 자연히 도태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피고용자들의 상당수가 취약계층인 관계로 사회적기업은 또 하나의 분절 노동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¹⁶⁾ 이에 대한 배려나 대책이 거의 없다는 사실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5. 우리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국내에서의 사회적기업의 현 주소를 거칠게나마 살펴보면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가치를 함께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실험이자 도전이다.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상호 모순되는 가치를 물리적으로 융합시키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는가?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반석 위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해답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발효한 2007년 후부터 현재까지 이룩한 성과와 시행착오를 토대로, 그간의 공·과(功過)를 냉정하게 점검하여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새롭게 작성해야 할 것 같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왜곡된 사회적 목적의 기준에 대한 제자리 찾기부터 시작해 인증제도의 타당성까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관련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현재까지 발견된 세부적인 지원체계의 각론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도 병행해 서둘러야 한다.

그 출발은 정부,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시민사회 영역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롭게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기를 찾아내고, 그를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미국의 대표적 사회적기업가 육성기관인 아쇼카(Ashoka) 재단과 같은 기관이 만들어져 정부와는 별도로

16) 김해창, “꿈꾸고 실천하는 사람들,” *녹색평론*, 107호, 2009년 7~8월, p. 233.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길도 신중히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아주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상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내야 한다. 이와 병행해 그라민그룹 산하의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처럼 대기업과 연계된 사회적 기업의 육성도 진지하게 검토해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노력들이 바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역점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